
2018 대학창업공동아카데미(모의창업실습과정) 운영을 위한

업무협약서

재단법인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(이하 ‘재단’이라 한다.), 경북대학교, 경일대학교, 계명대학교, 대구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.)는 대구경북지방 「대학창업공동아카데미」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재단이 주관하는 「대학창업공동아카데미」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협약기관 재학생 및 대구경북지방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대구경북지역의 ‘새로운 공동창업훈련 모델을 제시’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범위 및 역할) 협력범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재단은 창업공동아카데미 교육과정(모의창업실습)의 개설·운영, 강사 확보, 현장실습생 지원, 교육장소 및 설비 제공, 교육정보 제공, 운영지침 마련 등 사업전반을 관리·운영한다.

② 대학은 창업공동아카데미 교육과정(모의창업실습)의 사업비지원, 현장실습생 모집·추천, 학점인정, 공동강의 참여, 공동교육에 필요한 대학 강의실 및 설비 기자재 제공, 현장실습에 대한 편의 등을 제공한다.

제3조(비밀유지 의무) 협약기관은 본 협약으로 인해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협약 변경)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.

제5조(협약 기간) 본 협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창업선도대학 만료일로 하며, 협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서면동의 하에 확정 한다.

제6조(보칙)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협약 당사자의 재

규정 등에 의하고, 그 관계법령 및 재규정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모든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,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 대표가 상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0월 1일

(재)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
이사장 송종호



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
단장 강형구



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
단장 권순재



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
단장 최제용



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
단장 배재영

